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12150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김동길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2. 3.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지분을 ‘이 사건 지분’,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금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24.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소외 주식회사 E(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에 대한 공조덕트 설비공사 선급금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주주 C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20. 피보험자로부터 소외 회사의 공사포기(2020. 1. 29.) 등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받았고, 2020. 3. 31. 피보험자에 위 보험계약상 보험금 9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그 중 501,194,110원을 환수하였는바, 현재 소외 회사 및 위 C에 대하여 488,805,890원 등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C은 2020. 2. 3.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2020. 9. 21. 소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지분 + 피고의 1/2 지분(2009. 1. 20. 매매, 2009. 2. 23. 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등기원인 2020. 6. 10. 매매, 거래가액 258,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위 소외 회사의 공사포기(2020. 1. 29.) 등으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곧 발생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C이 이 사건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가사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더라도 과다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등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고 가액배상으로 일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내지 항변 요지

C이 이 사건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협의이혼을 대비한 적절한 재산분할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원피고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피고는 1998. 7. 8. C과 혼인신고하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갖고 살다가 (G생, H생), 2020. 1. 28. 이 법원 2020호협107호 협의이혼의사신청을 하였으며 2020. 3. 25. 협의이혼의사 확인되었다(을 제2, 3, 4, 6호증).

○ 피고는 1991. 9. 10.부터 1993. 6. 15.까지, 1998. 10. 1.부터 2016. 2. 27.까지 소외 I(주)에서 경리로 근무하였고, 2016. 10. 4.부터 2017. 8. 31.까지 J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8. 2.부터 2018. 6.까지 K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 10. 11.부터 2019. 12. 3.까지 소외 (주)L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등 C과의 혼인기간 중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왔다.

○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 외에도 아산시 M 토지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평가건 1층 주택 66.24㎡, 1층 점포 19.44㎡를 소유하였고(2005. 10.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을 제7호증) 가압류권자로서 경매절차에 참가한 원고도 일정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는 같은 해 제3자(F)에 대한 거래가액인 위 258,000,000원에 가깝고, C을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N은행 대출채무 잔액은 2020. 2. 3. 기준 합계 64,722,305원에 이르렀으며(을 제8호증), 위 채무는 C의 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C이 피고와 혼인기간 중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F에게 매도한 후 C의 대출채무 잔액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의 위 혼인기간, 경제활동, 두 자녀의 양육 기여, 교육, 결혼준비자금 등에 비추어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인 가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

부동산 표시

1. 1등의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15층 아파트

1층 469.726㎡

2층 453.406㎡

3층 453.406㎡

4층 453.406㎡

5층 447.862㎡

6층 447.862㎡

7층 447.862㎡

8층 447.862㎡

9층 447.862㎡

10층 447.862㎡

11층 447.862㎡

12층 447.862㎡

13층 447.862㎡

14층 447.862㎡

15층 447.8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4층 호 84.71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 39140.7㎡

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 27690.6㎡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 대지권 66831.3분의 47.273

